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1
----------	------

발의연월일 : 2020. 9. 3.

발 의 자 : 민병덕 · 임종성 · 서영석
홍성국 · 배진교 · 송옥주
김병욱 · 설 훈 · 천준호
송재호 · 이용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및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밀집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집단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단위면적당 근로자 수의 제한) 사업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5조제6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9조의2, 제40조”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9조의2(단위면적당 근로자 수의 제한) 사업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u> <u>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u> <u>3. 그 밖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제175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 18. (생략)

⑦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의2, 제40조-----

4. ~ 1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